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, 추심, 조정에 필요한 사항과 채권수탁추심업, 채권매입추심업 및 채무조정교섭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채권금융기관"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 - 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·허가·등록·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(業)으로 하는 자
 - 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
 - 다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2. "개인금융채권"이란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

로 보유하게 된 개인채무자(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)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.

- 가. 금전의 대부
- 나. 대위변제
- 다.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
- 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
- 3. "추심"이란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개인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, 재산조사, 상환촉구 또는 상환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
- 4. "채권추심자"란 추심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 - 가. 채권금융기관
 - 나. 채권수탁추심업자(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 인을 포함한다)
 - 다. 채권매입추심업자
 - 라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5. "채권수탁추심업"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채권에 대한 추심(채권금융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채무조정을 포함한다)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개인금융채권

- 나. 「상법」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
- 다. 판결 등에 따라 권원(權原)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채권
- 라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·공제조합·금고 또는 그 중앙회 ·연합회 등의 조합원·회원 등에 대한 대출·보증·여신이나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
- 마.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
- 6. "채권수탁추심업자"란 제45조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- 7. "채권매입추심업"이란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- 8. "채권매입추심업자"란 제54조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.
- 9. "채무조정"이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
 - 나.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상환
 - 다. 분할 상환
 - 라. 상환기간 연장

- 마.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
- 10. "채무조정교섭업"이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대행·지원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ㆍ제출
 - 나.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확인
 - 다. 채무조정 내용의 검토ㆍ협의
 - 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
- 11. "채무조정교섭업자"란 제67조에 따라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서는 제6조제3항,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 및 제14조부터 제17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1. 유치권
 - 2. 질권
 - 3. 저당권
 - 4. 양도담보권
 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리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권리
 -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부터 제13 조까지 및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제4조(채권금융기관 및 개인채무자 등의 책무) ① 채권금융기관은 이법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관리·추심·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 - ② 개인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개인금 융채권의 관리·추심·조정과 관련된 채권금융기관의 요청에 대하 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는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의 권리·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금융채권의 관리·추심·조정 및 개인채무자보호에 관한 제도·정책을 정비·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제2장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이 법보다 개인채무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 - ② 제3장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 - ③ 제4장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기준

제6조(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) ① 채권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(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을 포함한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1. 기한의 이익의 상실일
- 2. 기한의 이익의 상실 원인
- 3. 기한의 이익의 상실 효과
- 4. 채무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.
- ③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사용한 날

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.

-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일까지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.
- 제7조(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연체이자의 제한) ① 채권금융기관은 개인 금융채권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개인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르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에 따른 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.
 - ③ 제1항을 위반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로한다.
- 제8조(주택경매 예정의 사전통지) ① 채권금융기관은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개인채무자(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

에 신청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1. 경매신청 대상 주택에 관한 사항
- 2. 경매신청 예정일
- 3. 채무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주택의 경매에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매신청 예정일은 법원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여야 한다. 다만, 개인채무자가채권금융기관에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 절차의 개시를 희망하는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예정일 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개인채무자에게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④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사용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채무자가 경매신청 예

정일 전일까지 제39조에 따른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채권금융기관은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강제집행을 실행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.

- 제9조(장래 이자채권의 면제) ① 채권금융기관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된 채권으로서 「법인세법」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.
 - 1.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
 - 2. 개인채무자에게 면제된 이자채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
 - ②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 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제한) ①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 또는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제16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통지한 개인금융채권
 - 2. 제4장제2절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금융채권
 - 3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

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금융채권

- 4.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 중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
- 5. 채권의 존부(存否)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인 개인금융채 권
- 6.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채무자의 권 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개인금융채권
- ② 채권금융기관은 경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.
- 1. 국가
- 2. 지방자치단체
-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금융기관
- 4. 채권매입추심업자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제11조(채권양도 예정의 채무자 앞 통지) ① 채권금융기관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 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 호에 따른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

인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최초로보유한 채권금융기관에 환매하거나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- 1.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
- 2.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
- 3. 양수 예정인
- 4. 채무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개인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할 수 있다.
- ③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사용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양도할 수 있다.
- 제12조(채권 양도에 따른 양수인의 평가) 채권금융기관이 1개월 이상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

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을 평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유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
- 2.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 또는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
- 3. 개인금융채권을 최초로 보유했던 채권금융기관에 환매하는 경우 제13조(채권양도내부기준) ① 채권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업무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(이하 "채권양도내부기준"이라 한다)을 마련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채권양도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
 - 2. 임직원이 양도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
 - 3.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의 평가에 관한 사항
 - 4.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·평가
 - 5.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제정·변경 절차
 - 6.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
 - 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14조(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의 관리) 채권금융기관은 「법인세법」

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- 제15조(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) ① 채권금융기관은 임직원이 개인금융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 준(이하 "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"이라 한다)을 마련·시행하여야 한 다.
 - ②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
 - 2.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
 - 3.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조치를 위한 기준
 - 4.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관리방안
 - 5.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· 조치 · 평가
 - 6.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제정·변경 절차
 - 7.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
 - 8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할 수

있다.

- 제16조(소멸시효 완성의 통지) 채권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이 소멸시 효관리내부기준에 따른 소멸시효완성일(이하 "소멸시효완성일"이라 한다)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멸시효완성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련하여 소송이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관한 사항
 - 2. 소멸시효 완성일
 - 3.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
 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및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개인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17조(시효 이익의 포기) ① 개인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 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
 - ② 개인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소멸시효 완성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

제1절 개인금융채권 추심의 제한 기준

- 제18조(개인금융채권의 추심제한)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인금융채권
 - 2. 제4장제2절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이거나, 제42조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한 채권. 다만 제2호의 경우 개인채무자가 동일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 금융채권은 추심할 수 있다.
 - 3. 개인채무자가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
 - 4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
 - 5.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하는 경우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개인금융채권

- 제19조(추심의 통지)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심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추심연락의 횟수 제한) ① 채권추심자의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(개인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·글·음향·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. 이하 "추심연락"이라 한다)은 1주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다.
 - ②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추심연락의 유예) 채권추심자는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 없이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
 - 2.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상환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- 3.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제22조(추심연락의 유형 제한 요청) ① 개인채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

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채권추심자는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지체·저해시키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23조(채권추심자의 고지 의무) ① 채권추심자는 개인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(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 그 소속,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 -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소속 및 신분을 밝힐 때 정보원, 탐정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4조(채권추심내부기준) ① 채권추심자(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(이하 "채권추심내부기준"이라 한다)을 마련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채권추심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인력
 - 2.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
 - 3.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의 평가 및 관리에 관

한 사항

- 4.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·평가
- 5.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제정 변경 절차
- 6.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
- 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2절 채권추심자의 준수사항

- 제25조(추심 위탁의 통지) 채권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채무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.
- 제26조(추심 위탁의 제한)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여야 한다.
 - 1. 채권수탁추심업자
 - 2. 다른 법률에 따라 채권을 수탁하여 추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
- 제27조(채권수탁추심업자의 평가) 채권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수탁추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자를 평가하여야 한다.
- 제28조(추심 위탁 계약서)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수탁추심업자와 체결하

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범위
- 2.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
- 3. 위탁 기간
- 4.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의무
- 5.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29조(추심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) ①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수탁추심 업자가 이 법이나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 - ②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및 추심을 위탁한 개인금융채권의 개인채무자가 제기하는 민원 처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.
- 제30조(채권수탁추심업자의 추심 제한)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통해서만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.
 - 1.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임직원

- 2.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기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. 다만, 제84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.
- ②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채권만 추심할 수 있다.
- ③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위탁받은 추심업무를 그 소속의 위임직채권 추심인을 제외한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31조(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등)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위임, 위탁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추심업무를 하도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금융위원회에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②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그 소속 채권수탁추심 업자를 위해서만 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요건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2조(위임직채권추심인의 관리)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소속 위임직채 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 - 1.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
 - 2.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제1항, 제9조, 제10

조제1항.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

- 3.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제2항, 제11조제3 호부터 제5호까지, 제12조,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
- 제33조(채권매입추심업자의 채권 양수 제한) 채권매입추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개인금융채권(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중 개인금융채권 외의 채권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양도받거나 그 양도 받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
- 2. 제54조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추심업 등록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자제34조(채권매입추심업자의 업무 수행 방식)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직원(제60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)을 통해서만 업무를 하여야 한다.

제4장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

제1절 채무조정의 기준

- 제35조(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) ①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자신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36조(채무조정의 안내) ①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채권금융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② 채권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 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 절차 및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7조(채무조정의 기준)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개인채무자의 자산, 부채,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상환능력
 - 2.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소요 비용
 - 3. 채권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
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- 제38조(채무조정내부기준) ① 채권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
에 따라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(이하 "채무조정내부기준"이라 한다)을 마련 사 행하여야 한다.

- ② 채무조정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인력
- 2.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
- 3.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안내에 관한 사항
- 4. 제37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사항
- 5.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· 조치 · 평가
- 6.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
- 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채무조정내부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할 수 있다.

제2절 채무조정의 절차 및 방법

제39조(채무조정의 요청) ① 개인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

-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.
- 1. 개인금융채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,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 - 나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·간이회생· 개인회생 또는 파산·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 - 다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242조에 따라 인가받은 회생계획, 제293조의3과 제242조에 따라 인가받은 간이회생계획 및 제614조에 의해 인가받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폐지되지 아니한 경우
 - 라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 - 마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에 따라 성립한 채무조정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
- 2. 제44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재신청하는 경우
- ② 개인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권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의 서류 는 개인채무자가 작성한 경우에만 제출한다.
- 1. 채무조정 요청서

- 2. 채무조정안
- 3. 개인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관한 자료
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서류로서 채무조정에 필요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
- ③ 채권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40조(채무조정의 거절)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.
 - 1.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경우
 - 2. 개인채무자가 제39조제3항에 따른 수정·보완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개인채무자의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43조에 따라 채무조정이 종료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 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제41조(채무조정의 처리) ① 채권금융기관은 제39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에 대하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 - ② 채권금융기관은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·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·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③ 채권금융기관은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채무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을 작성·첨부하여야 한 다.
-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에 따른 수정·보완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2조(채무조정의 효력) ① 개인채무자가 제41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 융기관의 채무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.
- 제43조(채무조정 절차의 종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.
 - 1. 제40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
 - 2.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 하기로 통지한 경우
 - 3.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
- 제44조(채무조정의 합의 해제)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가 대통령령
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.

제5장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관련 업종

제1절 채권수탁추심업

- 제45조(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) ① 채권수탁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제46조의 허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를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 -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를 하거나 제 3항 본문에 따라 변경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

있다.

- 제46조(허가 요건)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
 - 가.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
 - 나. 「무역보험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
 - 다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
 - 라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법인
 - 마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
 - 바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
 - 2.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
 - 3. 사업에 필요한 인력, 시설 및 전문성을 갖출 것
 - 4. 50억원의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출 것
 - 5.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. 이 경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.

- 6. 임원(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- 7. 제92조에 따라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
-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7조(임직원의 자격요건)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.
 - 1. 미성년자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선임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-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
 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- 6.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7.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(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라 허가·인가·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(취소 사유

- 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으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 또는 면직에 관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
 - 가. 해임 또는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나.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제8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 조치를 통보 받은 경우 그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.
- ②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된 경우에는 그 직(職)을 잃는다.
- ③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
- 제48조(대주주의 변경 승인 등) ①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(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제4호에서 같다)하여 대주주(최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,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

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자는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주주가 될 수 있다.

- 1. 국가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3. 그 밖에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
- ②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취득을 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및 주식 취득 후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 또는 주식 취득후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주주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49조(겸영업무 및 부수업무)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

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·허가·등록·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가·허가·등록·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한다.

- 1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업
- 2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
- 3.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- ② 채권수탁추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1. 채권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
- 2.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 업무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.
- 3.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-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하

-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제한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- 1. 채권수탁추심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
- 2.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제50조(이용자보호기준 등)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(이하 "이용자보호기준"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이용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를 관리·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 다만, 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채권수탁추심업자는 보호감시인을 두지 아니할수 있다.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을 것
 - 가. 한국은행 또는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 각 호의 기관(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)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
 - 나.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 (職)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
 - 다.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

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

- 라.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, 증권선물위원회, 또는 「금융위원회의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(이하 "금융감독원"이라 한다)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. 다만,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.
- 마.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경력으로서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
- 2.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- 3.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장(이하 "금융감독원장"이라 한다)으로부터 주의 또는 주의 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
- ③ 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(이하 "보호감시인"이라 한다)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할 수 있다.
- ④ 보호감시인이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감시인의 업무 이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1조(영업의 양도·양수 등 인가) ① 채권수탁추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·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(「상 법」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려는 경

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- ②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,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,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 인 또는 분할이나 합병 전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. 이 경우 종전의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.
-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, 분할·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,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, 분할·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. 다만, 양수인, 분할·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·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,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52조(영업의 휴업·폐업 신고)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제53조(공고)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의 허가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.
 - 1. 제45조제2항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
 - 2.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
 - 3.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
 - 4. 제5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
 - 5. 제52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
 - 6. 제83조제1항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·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

제2절 채권매입추심업

- 제54조(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) ① 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은 등록 없이 채권매입추심업을 할 수 있다.
 - ②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

- 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.
- 제55조(등록요건)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추심업자의 등록 요 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신청인이 법인일 것
 - 2.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
 - 3.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또 는 기본재산을 갖출 것
 - 4.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. 이 경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.
 - 5. 임원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업무총괄사용인이 제6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 - 6. 최근 5년간 제8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
 - 7. 제92조에 따라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
 - 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 - 9. 최근 1년간 제66조제1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
 - 10. 그 밖에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

-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6조(등록증의 발급) ① 금융위원회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55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부에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분 실 또는 훼손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.
 - ③ 채권매입추심업자는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57조(등록의 갱신) ①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유효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한 자가 제55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부에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의 3개월 전까지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유효기간의 만료사실 및 등록갱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.
- 제58조(등록부의 공개)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
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제59조(채권매입추심업자의 교육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표자, 임직원 등은 채권매입추심업자의 등록,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,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이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 - 1. 제54조제1항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
 - 2. 제57조제1항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
 - 3. 제54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, 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0조(임직원의 자격요건)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원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.
 - 1.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(제6호는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사람
 - 2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- 3.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. 다만, 마목 및 바목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.

- 가.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
- 나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제4항은 제 외한다)
- 다.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
- 라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
- 마. 「형법」 제257조제1항, 제260조제1항, 제276조제1항, 제283조 제1항, 제319조, 제350조 또는 제366조
- 바.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부터 제7조까지사. 금융관계법령
- 4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직원이 될 수 없다.
- 1.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2. 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 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다.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③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.
- 제61조(업무총괄사용인) ① 채권매입추심업자는 해당 영업소의 매입추 심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(이하 "업무총괄사용인"이라 한다)을 두어 야 한다.
 - ②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2조(겸영업무 및 부수업무) ① 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·허가·등록·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한다.
 - ② 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겸영·부수업무 제한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이 경우 "채권수탁추심 업자"는 "채권매입추심업자"로 본다.
- 제63조(이용자보호기준 등)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.
- 제64조(총자산한도 등) ①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(이하 "총자산한도"라 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의 대금 중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(이하 "담보조달비율"이라 한다)은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채권금융기관은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해당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려는 경우 그 채권의 담보조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한도 및 담보조달비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5조(영업의 양도·양수 등 신고) ① 채권매입추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·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양수인, 분할 ·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합

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분할이나 합병 전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. 이 경우 종전의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효력을 잃는다.

- ③ 이 법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, 분할 ·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,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, 분할·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. 다만, 양수인, 분할·합병에 따라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따라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하거나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,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.
- 제66조(영업의 폐업 신고) ① 채권매입추심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85조에 따른 처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(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)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다.

- ③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금융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매입추심업의 폐업 신고 및 등록증 반납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절 채무조정교섭업

제1관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 등

- 제67조(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) ① 채무조정교섭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·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은 등록 없이 채무조정교섭업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.
- 제68조(등록 요건)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교섭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

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.

- 1. 제55조제1호, 제4호, 제8호 및 제9호
- 2.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
- 3.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또 는 기본재산을 갖출 것
- 4. 임원이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- 5. 최근 5년간 제8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
- 6. 그 밖에 채무조정교섭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-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9조(임직원의 자격요건)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,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람은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② 제6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직원이 될 수 없다.
 - ③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임원이 된 후에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.

- 제70조(준용) 채무조정교섭업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채권수탁추심업자" 또는 "채권매입추심업자"는 "채무조정교섭업자"로 본다.
 - 1.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증 발급, 재발급 및 대여 금지: 제56조
 - 2. 채무조정교섭업 등록의 갱신: 제57조
 - 3. 채무조정교섭업의 등록부 공개: 제58조
 - 4. 채무조정교섭업 교육: 제59조
 - 5.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신고: 제62조제1항 및 제2항
 - 6.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제한 또는 시정명령 : 제49조제4항
 - 7.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: 제50조. 다만, 채무조정교섭업자 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보호감시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 - 8. 영업의 양도・양수 등 신고: 제65조
 - 9. 폐업 신고: 제66조

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관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업무수행 준칙

- 제71조(채무조정교섭업자의 책임) ①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②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채무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

- ③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에 거 짓 또는 잘못된 정보·자료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72조(채무조정교섭업자의 설명의무) ①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와 채무조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개인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채무를 경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.
 - 1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·간이회생· 개인회생 또는 파산·면책
 - 2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
 - 3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 - ②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채무조정을 위하여 개인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
 - 1.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업무 내용 및 절차
 - 2. 계약해지 · 해제 사유
 - 3. 채무조정에 따른 개인 신용의 변동 여부
 - 4. 제74조에 따른 수수료
 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

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
- 제73조(채무조정에 관한 계약의 체결)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자 와 채무조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.
- 제74조(채무조정교섭업자의 수수료) ①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개인채무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.
 - 1. 채무조정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
 - 2.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 성립에 대한 수수료
 - 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은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③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는 제1항제2호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산정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5조(채무조정교섭업의 수행)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임직원(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76조(연체유도의 금지)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채무자에게 연체 또는 연체상황의 유지를 강요하거나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77조(대리 의사표시의 제한) 채무조정교섭업자는 그 명칭에 관계 없

- 이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에 대한 의사표시를 대리하거나 위탁 받을 수 없다.
- 제78조(개인채무자의 재산보관 금지)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74조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개인채무자의 금전·물품·재산을 보관·예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79조(채무조정교섭업자의 이해상충 방지)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명칭에 관계 없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, 물품, 그 밖의 재산적 가치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채무조정 교섭업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.
- 제80조(채무조정교섭업자의 광고) ①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아닌 자는 채무조정교섭업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채무조정교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
 - 2.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
 - 3.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의 효과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
 - 4.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
 - 5. 다른 채무조정교섭업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
 - 6. 다른 채무조정교섭업자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
 - 7. 그 밖에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

있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

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절 지도 · 감독

- 제81조(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 대한 감독)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위하여 채권수탁추심업자, 위임직채권추심인, 채권매입추심업자, 채무조정교섭업자 및 채권금융기관(이하 "채권수탁추심업자등"이라 한다)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
 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권수 탁추심업자등에게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, 자료의 제출,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 - ③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등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④ 채권수탁추심업자,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82조(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 대한 검사) ①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직

원에게 채권수탁추심업자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-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권수탁추심업자,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에게 보고, 자료의 제출,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수 있다.
-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83조(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)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수탁추심업 허가 또는 인 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
 - 2. 제4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출자 비율을 위반한 경우. 다만, 채 권수탁추심업자의 주식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4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.

- 3. 자기자본이 제46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. 다만,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 다.
- 4. 제46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
- 5.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
- 6.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 전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- 7.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
- 8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9.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③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- 1. 제4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인력, 시설과 관련한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
- 2.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수탁추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

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.

- 제84조(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)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임직채 권추심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
 - 2.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
 - 3.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 전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 - 4.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9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한 경우
 - 5.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
 - 6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
 -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③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 - 1.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

- 2.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심업무를 한 경우
- 3.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호·제5호를 위반 한 경우
- 4. 그 밖에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 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제85조(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)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
 - 2. 제55조제1항제2호, 제4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
 - 3.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
 - 4. 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 전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 - 5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
 - 6.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해당 채권매입추심업자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
 - 7.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- 8. 그 밖에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 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소(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③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- ④ 금융위원회는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- 1.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.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, 제7조부터 제9 조까지,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
- 3. 그 밖에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 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⑤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-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 우 해당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

있다.

- 제86조(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방법) ①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같은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 취득한 개인금융채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.
 - 1. 제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
 - 2. 제66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
 - 3. 제8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권을 처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매입추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제26조에 따른 위탁을 통해서만 추심할 수 있다.
- 제87조(채무조정교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) ①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교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교섭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.
 - 1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
 - 2. 제6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
 - 3.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
 - 4.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 전 3년 이내에 영업정지

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
- 5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 한 경우
- 6.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7. 그 밖에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교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- 1.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.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개인채무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③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, 등록증의 반납,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제85조를 준용한다.
- 제88조(채권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) 금융위원회는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채권금융기관이 별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 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89조(임직원에 대한 조치)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, 채권 매입추심업자, 채무조정교섭업자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임원이 별표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 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- 1. 해임권고
- 2. 직무정지
- 3. 문책경고
- 4. 주의적 경고
- 5. 주의
- ②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, 채권매입추심업자, 채무조정교 섭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의 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,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의 조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.
- 1. 면직
- 2. 정직
- 3. 감봉
- 4. 견책
- 5. 주의
- ③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,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그 위반행위에 한하여 채권수탁 추심업자의 직원으로 본다. 다만,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제32조에 따

- 른 관리책임의 이행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직원으로 보지 아니한다.
- ④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채권수탁추심업자, 채권매입추심업자, 채무조정교섭업자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퇴임·퇴직한 임직원이 재임·재직 중이었다면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채권수탁추심업자 등은 그 퇴임·퇴직한 임직원에게 통지사실 및 조치의 내용 등을 통보하고, 통보한 내용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제6장 보칙

- 제90조(손해배상의 책임) ① 채권수탁추심업자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채권수탁추심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수탁추심업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경우로서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이 법 또는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채권수탁추심업자와 연대하여 손해를

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채권금융기관이 상당한 주의로 제29조에 따른 지도·감독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③ 채권수탁추심업자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 또는 그의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상당한 주의로 제32조에 따른 관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제2항은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구상권 행사를, 제3항은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채권수탁추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각각 방해하지 아니한다.
- 제91조(법정손해배상의 청구) ① 개인채무자는 채권수탁추심업자등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90조에도 불구하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채권수탁추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 -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.
 - ④ 제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채무자는 사실심(事實審) 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

수 있다.

- 제92조(손해배상의 보장) ① 채권수탁추심업자,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영업보증금 예탁
 - 2.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 구매
 - 3. 공제 가입
 - ② 채권수탁추심업자,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93조(행정처분 등의 공표)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자, 채권매입추심업자 또는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제83조, 제85조, 제87조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.
- 제94조(상호) ① 채권수탁추심업자,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 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호 또는 명칭을 표 시하여야 한다.
 - ② 채권수탁추심업자,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,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, 명칭을

사용하지 못한다.

- ③ 채권수탁추심업자,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채권수탁추심업, 채권매입추심업 및 채무조정교섭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95조(등록수수료 등) ① 제54조 및 제67조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자 또는 채무조정교섭업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수수료를 내야 한다.
 - ② 제82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채권매입추심업자 또는 채무조정교 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.
- 제96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부금융협회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협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처리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.

제97조(규제의 재검토) 금융위원회는 채권수탁추심업 중 채무조정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장 벌칙

- 제9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권수탁추심업을 영위한 자
 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
 - 3.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
 - 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
 - 5.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한 자
 - 6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
 - 7.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채권매입추심 업을 영위한 자

- 8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7조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 을 한 자
- 9.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10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
- 제9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26조를 위반하여 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자
 - 2.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조정교섭업을 영위한 자
 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
 - 4. 제70조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조정교섭업을 영위한 자
 - 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을 한 자
 - 6. 제70조제8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- 7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제8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
- 제10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

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
- 2.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
- 3. 제33조를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양도받거나 추심한 자
- 4.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자
- 5. 제76조를 위반하여 연체 또는 연체상황의 유지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자
- 6. 제77조를 위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
- 7.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
- 8. 제83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
- 9. 제85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
- 10.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나 명칭을 사용한 채권수탁추심업 자 및 채권매입추심업자
- 11.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수탁추심업 또는 채권매입추심업을 하게 한 자
- 제10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추심을 하게 한 자
 - 2.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추심업무를 한 자
 - 3. 제4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
 - 4.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

- 5.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
- 6. 제70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한 자
- 7. 제84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
- 8.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
- 9. 제87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
- 10.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나 명칭을 사용한 채무조정교섭업자
- 11.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무조정교섭업을 하게 한 자
- 제102조(병과)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규정에 따른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.
- 제103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0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14조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한 자

- 2.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32조제2호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. 다만,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상당한 주의로 제32조에 따른 관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3. 제3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한 자
- 4.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5.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
- 6.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
- 7.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원을 고용한 자
- 8.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9.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
- 10.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원을 고용한 자
- 11. 제70조제9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제1항를 위반하여 폐업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
- 12. 제7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
- 13. 제78조를 위반하여 보관・예치한 자
- 14.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
- 15. 제81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
- 16. 제81조제4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 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
- 17.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요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
- 2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
- 3.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
- 4.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32조제3호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. 다만,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상당한 주의로 제32조에 따른 관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5. 제40조를 위반하여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자
- 6.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은 자
- 7.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
- 8.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
- 9. 제79조 본문을 위반하여 금전, 물품, 그 밖의 재산적 가치 등을 받은 자
- 10. 제86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심한 자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
- 2. 제8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경매를 신청한 자
- 3.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

로 통지한 자

- 4.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
- 5. 제16조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
- 6.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 본문을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
- 7.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- 8. 제25조를 위반한 자
- 9.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하지 아니한 자
- 10. 제4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
- 11. 제7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자
- 12.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
- 13. 제73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 니한 자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19조를 위반하여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자
- 2.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
- 3.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32조제1호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채권수탁추심업자. 다만, 채권수탁추심업자가 상당한 주의로 제32조에 따른 관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4.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
- 5.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자
- 6.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- 7.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- 8.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실 또는 훼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9.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- 10. 제6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- 11.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
- 12. 제70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실 또는 훼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13. 제70조제5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- 14. 제70조제6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
- 15. 제70조제9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
- 16. 제8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

- 17. 제8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연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연체이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추심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연체된 개인금 융채권의 추심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5조(추심연락의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채무자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6조(추심연락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인채무자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7조(추심 위탁 계약서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채권 추심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- 제8조(추심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9조(위임직채권추심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 인으로 등록한 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- 제10조(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체가 발생한 채무부터 적용한다.
- 제11조(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 전의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는 채권추심회사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제12조(대주주의 변경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 전의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자는 제48조에 따라 채권수탁추심 업자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- 제13조(채권수탁추심업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를 신고한 자는 제49조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자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.
- 제14조(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

- 전의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.
- 제15조(등록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) ① 제57조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부터 적용한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면 제 57조제1항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.
- 제16조(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에 관한 적용례)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전의 대부와 대부채권매입추심을 겸영하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부터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.
- 제17조(총자산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시행 이후 매입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.
- 제18조(채권수탁추심업자 등의 법위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위 반한 행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따른다.
- 제19조(채권매입추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

률」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 제20조(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시행 전에 종전의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」에 따라 기존에 체결한 계약 등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로 보는 자는 해당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이법에 따른 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.

- 제21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시·도지사, 금융감독원장 또는 대부금융협회, 신용정보협회는 제7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것으로 본다.
- 제22조(상호에 관한 적용례) 제94조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상호 중에 "신용 정보"를 사용 중인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23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따른다.

- 제24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 10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따른다.
- 제2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4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72.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

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8호에 따른 채권매입추심업자

법률 제14380호 교육세법 부칙 제4조 중 "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"를 "대부업자, 대부중개업자 또는 채권매입추심업자"로 한다.

③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 중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"를 "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"로 한다.

④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6항제1호다목 중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"을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"으로 한다.

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5.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

⑥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2제1항 중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권추심회사(이하 이 조에서 "채권추심회사"라 한다)"를 "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채권수탁추심업자"라 한다)"로 한다.

제47조의2제2항 단서 중 "채권추심회사"를 "채권수탁추심업자"로 한다.

⑦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 중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"를 "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5조"로, "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"을 "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"으로 한다.

⑧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권추심회사(이하 이 조에서 "채권추심회사"라 한다)"를 "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채권수탁추심업자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「개인금 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.

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전단 중 "업(業)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(이하 "대부채권매입추심"이라 한다)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"을 "업(業)으로 하는 것"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중 "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"을 "대부업등 및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권매입추심업자(이하 "채권매입추심업 자"라 한다)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 및 채권매입추심업자 의 건전한 발전"으로 하고, "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"를 "대부금 융협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"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"를 "대 부금융협회"로 한다.

⑩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3항 중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"을 "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법률」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무를"로 한다.

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 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신용정보업
- ②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 본문 중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권추심회사(이하 이 조에서 "채권추심회사"라 한다)"를 "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채권수탁추심업자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

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「개인금 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. 제32조제2항 중 "채권추심회사"를 "채권수탁추심업자"로 한다.

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0호, 제10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8호가목, 같은 호 나목1) 및 2) 중 "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를 각각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본인신용정보관리업, 채권추심업"을 "본인신용정보관리업"으로, "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"을 "신용정보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"을 "신용정보업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개인신용평가업,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"을 "개인신용평가업 및 신용조사업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"채권추심업"을 "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(이하 "채권수탁추심업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"신용정보업, 본

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"을 각각 "신용정보업 또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"으로 하고. 같은 항 제3호의2 중 "제22조제1항ㆍ제2 항,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"을 "제22조제1항 · 제2항 또는 제22 조의8"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"을 각각 "신 용정보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"를 "신용조사업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 한다. 제7조제1호 및 제6호 중 "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 추심업"을 각각 "신용정보업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"으로 한다. 제8조제1항 본문 중 "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 추심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 한다. 제9조제1항 본문 중 "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 추심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 한다. 제10조제1항 중 "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 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 사가 제1항"을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제1항"으 로. "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 이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를 "신용

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, "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서의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22조,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"를 "제22조 및 제22조의8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 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 하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 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 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5호의 채권수탁추심업(이하 "채권수탁추심업"이라 한다) 제1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2. 채권수탁추심업

제1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.

2. 채권수탁추심업

제11조의2제1항 중 "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를 각각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"신용정보회사.

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 한다.

제12조 본문 중 "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채권추심회사"를 "본인신용 정보관리회사"로, "(MyData)·채권추심 또는"을 "(MyData) 또는"으 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"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채권추심회사"를 "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 한다.

제13조 중 "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 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"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신용정보회사 및 보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제22조제1항·제2항,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"을 "제22조제1항·제2항 및 제22조의8"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.

제15조제1항 전단 중 "채권추심회사, 신용정보집중기관"을 "「개인 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(이하 "채권수탁추심업자"라 한다), 신용정보집중기관"으로 한다.

제20조제3항 본문 중 "채권추심회사"를 "채권수탁추심업자"로 한다. 제5절 채권추심업을 삭제한다.

제32조제6항제1호 중 "채권추심회사가"를 "채권수탁추심업자가"로, "채권추심회사 또는"을 "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채권추심(추심채권"을 "추심(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추심을 말하며, 같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채권"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"채권추심회사"를 "채권수탁추심업자"로 한다.

제41조를 삭제한다.

제43조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44조제1항 중 "채권추심회사는"을 "채권수탁추심업자는"으로, "채권추심회사 사이"를 "채권수탁추심업자 사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채권추심회사"를 "채권수탁추심업자"로 한다.

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부분 중 "법(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」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"을 "법"으로 한다.

1.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수탁추심업자

제47조제1항 중 "채권추심회사, 신용정보집중기관"을 "신용정보집중기관"으로 한다.

제48조제1호 중 "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" 를 "신용정보업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50조제2항제1호 중 "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"를 "신용정보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"로, "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"을 "신용정보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"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의3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"신용정보회사 및 치권추심회사"를 "신용정보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2조제2항제1호 중 "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채권추심회사"를 "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로, "(MyData)·채권추심"을 "(MyData)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제5호의2를 삭제하고.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삭제하며.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.

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 중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

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"를 "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채권수탁추 심업자"로 한다.

⑤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"금융업 및 대부업"을 "금융업·대부업 및 채권매입추심 업"으로 한다.

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중 "제9호 및 제10호"를 "제9호"로, "채권추심회사"를 "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"를 "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제46조제1항제1호"로,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"을 "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"을 "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(이하 이 조에서 "채권수탁추심업"이라 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금융채권(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채권수탁추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9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재단은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채 권수탁추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.

제40조제3항 및 제4항 중 "또는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"를 각각 ", 「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"로 한다.

제40조제5항단서 중 "신용정보회사"를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「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"로 한다.

- (B)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2.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
-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4항 중 " 및 "같은 조 제10호"를 삭제하고, 채권추심업"을 "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제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"으로 한다.

②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"를 "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"로, "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"을 "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"으로, "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"를 "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채권수탁추심업자의 부수업무"로 한다.

제45조제1항제3호 중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(이하 "채권추심회사"라 한다)"는 "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가를 받은 채권수탁추심업자(이하 "채권수탁추심업자"라 한다)"로 한다.

제45조제8항 단서 중 "채권추심회사"를 "채권수탁추심업자"로 한다. 제26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

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채권수탁추심업자, 위임직채권추심인, 채권매입추심업자, 채무조정교섭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처분 사유(제83조제1항·제3항, 제85조제1항·제4항, 제87조제1항·제2항, 제88조, 제89조제1항·제2항 관련)

- 1.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
- 2.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
- 3.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매신청 예정일을 정한 경우
- 4. 제8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
- 6.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
- 7.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7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경우
- 8.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경우
- 9.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
- 10.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경우
- 11. 제12조에 따라 양수인을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
- 12. 제13조에 따라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
- 13. 제14조에 따라 필요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한 경우
- 14. 제15조에 따라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
- 15. 제16조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
- 16.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경우
- 17. 제19조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18.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 본문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경우
- 19.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채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20.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경우
- 21.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
- 22. 제24조에 따라 채권추심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
- 23. 제25조를 위반하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
- 24. 제26조를 위반하여 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경우
- 25. 제27조에 따라 채권수탁추심업자를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
- 26.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
- 27.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·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28.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

- 28.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- 29. 제30조를 위반하여 추심을 한 경우
- 31.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추심업무를 한 경우
- 32. 제33조를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양도받거나 추심한 경우
- 32. 제3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
- 33.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33. 제36조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34. 제38조에 따라 채무조정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
- 35. 제40조를 위반하여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
- 36. 제4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
- 37.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38.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직원을 선임하거나 고용한 경우
- 39.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경우
- 40.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- 41.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42.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
- 43.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
- 44.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45.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실 또는 훼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45.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
- 46.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
- 47.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을 선임한 경우
- 48.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원을 고용한 경우
- 49.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- 50. 제6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51.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
- 52.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감시인과 관련 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53.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를 초과한 경우
- 54.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보조달비율을 초과한 경우
- 55.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55.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선임한 경우

- 56.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원을 고용한 경우
- 57. 제70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실 또는 훼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57. 제70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
- 58. 제70조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
- 59. 제70조제5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- 60. 제70조제6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6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
- 61. 제70조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
- 62. 제70조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63. 제7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ㆍ자료를 전달한 경우
- 64.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
- 65.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
- 67. 제73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
- 68.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
- 69.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
- 70.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
- 71. 제7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73. 제76조를 위반하여 연체 또는 연체상황의 유지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경우
- 74. 제77조를 위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
- 75. 제78조를 위반하여 보관 · 예치한 경우
- 76. 제79조 본문을 위반하여 금전, 물품, 그 밖의 재산적 가치 등을 받은 경우
- 77.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
- 78.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79. 제81조제4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경우
- 80.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요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- 81. 제83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
- 82. 제8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83. 제84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

- 84. 제85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
- 85. 제8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86.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
- 87. 제86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심을 한 경우
- 88. 제87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
- 89. 제8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8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90. 제89조제1항에 따른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및 제2항에 따른 면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91. 제9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92.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또는 명칭을 표시한 경우
- 93.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채권수탁추심업, 채권매입추심업 또는 채무조정교섭업을 하게 한 경우
- 94. 채권추심자가 제3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- 95. 그 밖에 채권수탁추심업자, 위임직채권추심인, 채권매입추심업자, 채무조정교 섭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 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